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9. 7.
발 의 자 : 박정자의원외4인

1. 제안유

- '98회계년도 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(안)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
-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

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